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호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

2588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:김호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경만선, 김인제, 김태호,

박기재, 성흠제, 우형찬, 이승미, 이영실, 이은주.

조상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○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내 일부 용도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및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 외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물 규정을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주차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3 제2호 중 "요양소"를 "요양병원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의 최고한도 란 중 "200㎡당"을 "122㎡당"으로 하며, 같은 표 비고 제2호마목 중 "시설물 (판매시설 중 백화점·쇼핑센터·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·전 시장·예식장은 제외한다)"을 "시설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| 개 정 안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
| [별표3] | | [별표3] | |
|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| 지역에서 |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| 지역에서 |
| 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 | 설치기준(제 | 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 | 치기준(제 |
| 21조제2항 관련) | | 21조제2항 관련) | |
| 시설물 | 최고한도 | 시설물 | 최고한도 |
| 1.위락시설 | 시설면적 | 1.위락시설 | (현 행 과 |
| | 134 m² 당 | | 같음) |
| | 1대 | | |
| 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 | 시설면적 | 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 | 시설면적 |
| 장을 제외한다), 종교시 | <u>200 m² 당</u> | 장을 제외한다), 종교시 | <u>122 m² 당</u> |
| 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| 1대 | 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| 1대 |
| 의료시설(정신병원· <u>요양</u> | | 의료시설(정신병원 · <u>요양</u> | |
| 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| | 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 | |
| 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 | | 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・ | |
| 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| |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 | |
| 을 제외한다), 업무시설 | | 장을 제외한다), 업무시 | |
| 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| | 설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| |
|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설 | | 을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 | |
| 중 방송국, 장례식장 | | 설중 방송국, 장례식장 | |
| | | | |
| | | | |
| 3.~8.(생략) | (생 략) | 3.~8. (현행과 같음) | (현 행 과 |
| Amendo societa signi | | processor and a contraction place of the contraction of the contractio | 같음) |
| | | | RESESSIVE OF |

| 현 행 | 개 정 안 | |
|--|--|--|
| <비 고> 1. (생 략) | <비 고> 1. (현행과 같음) | |
| 2.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 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 2. (현행과 같음) | |
| 가.~라. (생 략) | 가.~라. (생 략) | |
| 마. 주차전용건축물(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)에 주차 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(판매시설 중 백화점·쇼핑센터· 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 화관·전시장·예식장은 제외한 다) | 마. 주차전용건축물(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)에 주차 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<u>시설물</u> | |
| 3.~13. (생 략) | 3.~13. (현행과 같음) | |